

경영공시(수시공시)-충당금적립에 따른 손실 발생 보고

1. 경위

가. 소송 관련 경과 내용

1) 회사는 2013.06.14.자 유진자산운용(주)와 유진DEC사모증권 투자신탁 1호 관련 이자율스왑거래약정을 체결하여,

2013.06.15.부터 2018.02.15.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4,881,548,493 원을, 만기이자로 2018.02.15. 2,522,152,960원을 지급하고, 만기일인 2018.02.15. 이자 등 합계 19,696,167,123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회사는 이자율스왑거래 만기일(2018.02.15.)에 회사가 지급할 고정이자에서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공제한 10,144,623,498원을 지급하라고 유진자산운용(주)에 청구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회사는 2018.08.22. 유진자산운용(주)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20.08.14.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4) 그러나 유진자산운용(주)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2021.11.18. 항소심 판결에서 유진DEC사모증권 투자신탁 1호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변제하라는 일부승소를 하였습니다.

5) 이후, 회사와 유진자산운용(주)가 각각 대법원에 상고하여, 2024.07.11.자 대법원 판결에 의해 회사의 청구는 기각되고, 유진자산운용(주)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나. 소송 관련 회계법인의 대손충당금 적립요구 반영

1) 대법원에서 2024.07.11.자로 판결선고가 있어 1분기 보고기간 이후 발생한 사건이지만, 대법원 판결 진행중이던 2023.02.28.일까지 유진자산운용(주)는 금융투자협회의 펀드관련 공시사항에 동 신탁재산(유진DEC사모증권투자신탁1호)을 526억으로 공시하였으나, 불명확한 사유로 대법원 판결일 전인

2023.10.31.일부터는 순자산을 -117억으로 공시하고 있어, 동 소송사건의 최종판결 전이라도 총당금을 100% 설정하는게 좋다는 외부감사인의 권고에 따라 총당금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2) 회사는 기타자산으로 8,277,705,206원, 미수수익으로 1,901,663,247원 합계 10,179,368,453원이 본건 관련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기존의 총당금은 1%를 설정하여 101,793,684원의 총당금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2변항 표 참조]

3) 금번 외부감사인의 권고에 따라 자산에 대한 100% 총당금 설정하였으며, 추가 설정된 총당금 금액은 10,077,574,769원입니다. [2변항 표 참조]

2. 금액

(단위 : 원)

계정	원가	기 총당금	추가설정 총당금	총당금 총액	장부금액
기타자산	8,277,705,206	82,777,052	8,194,928,154	8,277,705,206	-
미수수익	1,901,663,247	19,016,632	1,882,646,615	1,901,663,247	-
합계	10,179,368,453	101,793,684	10,077,574,769	10,179,368,453	-

3. 수지에 미치는 영향

2. 금액에서와 같이 추가 총당금설정액 10,077,574,769원 만큼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4. 조치내용 및 계획 등

회사는 본 소송과 관련하여 파기환송심 대응을 위해 새로운 법무법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본 소송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